



일본 퇴직연금 중소기업 사업주 매칭제도 시행 주요내용

이상우 수석연구원

최근 일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매칭제도를 실시함. 동 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개인형 DC제도에 가입 및 납입할 경우 사업주가 일정한 기여금을 부담하는 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제공되므로 퇴직연금 가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

■ 최근 일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소규모사업주 기여금납부제도(이하, 중소기업 사업주 매칭제도)를 시행함

- 중소기업 사업주 매칭제도는 확정각출연금법¹⁾에 따라 퇴직일시금제도에 소속된 종업원이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형 DC제도에 가입하여 납입할 경우 사업주가 매칭하여 기여금을 부담하는 제도임
- 일본은 2012년 종업원 DC에서 매칭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, 미국은 401k에서 사업주 매칭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 또는 종업원 매칭제도가 도입되지 않음

■ 일본은 최근 투자 활성화 전략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정책에 의한 DC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
- 아베 정부²⁾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 및 연금정책 수립을 주문하고 중소기업의 DC형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투자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
- 일본은 <표 1>과 같이 중소기업의 28.0%가 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,³⁾ 퇴직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중소기업 대부분(70.4%)이 퇴직일시금제도⁴⁾를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전환이 미진한 실정임

1) 정식명칭은 『확정각출연금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』 (2016년 법 제66호)

2) 일본재흥전략(2014. 6)의 투자활성화 정책

3)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에서 사업주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도입을 강제화하지 않음

4) 일본은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도입을 선택할 수 있음

〈표 1〉 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실시 현황

구분	퇴직급여제도 유무		퇴직급여제도 종류		
	있음	없음	일시금제도	병행제도	퇴직연금
대기업(1,000인 이상)	93.6%	6.4%	23.0%	48.1%	28.9%
중소기업(30~99인)	72.0%	28.0%	70.4%	25.9%	3.7%
전체	75.5%	24.5%	65.8%	22.6%	11.6%

자료: 厚生労働省, 平成25年 就労条件総合調査를 기초로 작성

■ 중소기업 사업주 매칭제도는 종업원이 개인형 DC 가입 및 일정한 기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 매칭 기여율 등 기여 여부에 대한 노·사 합의를 요건으로 함

- 대상 기업은 〈표 2〉와 같이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, 노·사 합의에서 사업주의 기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업주 부담이 강제는 아님

■ 기여 한도는 〈표 2〉와 같이 종업원과 사업주가 합산하여 월 2만 3천 엔, 연간 27만 6천 엔까지이며, 종업원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사업주 부담의 손비처리, 운용시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됨

- 사업주 매칭 기여가 실시되면 종업원의 기여금을 회사가 급여일에 원천징수하여 회사의 기여금과 함께 종업원 개인형 DC계좌에 납입함
- 이에 따라 최근 종업원과 기업의 퇴직일시금에서 개인형 DC로 전환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

〈표 2〉 일본 중소사업주 기여제도 주요 내용

항목	주요 내용
실시 요건	· 사업주 기여 부담에 대한 노사 합의
대상 기업	· 상용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 · DB형제도·기업형 DC제도 미실시(즉, 퇴직급여제도가 없거나 퇴직일시금제도만 도입된) 기업
기여 방법	· 종업원의 기여금을 사업주 원천징수에 의해 납입
기여 한도	· 종업원과 사업주 기여한도액은 연간 27만 6천 엔 이하
기여액	· 종업원이 사업주 기여액 초과 가능
세제혜택	· 종업원 기여액 연간 27만 6천 엔 한도 소득공제, 사업주 부담 손비처리, 운용 시 비과세

자료: りそな年金研究所(2018, 1)를 기초로 작성

■ 일본 정부는 개인형 DC의 세제혜택과 사업주 매칭제도가 중소기업 종업원의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⁵⁾ [kiri](#)

5) 松澤雅(2015, 6), 企業年金改革の今後の展望, p. 74, 参議院事務局